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수입
인지

중국공상은행

지점 앞

20 년 월 일

본인 _____ (인)
주소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중국공상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	거 래 구 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여신(한도) 금액	금	원		
여신개시일	20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일	20 년 월 일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변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
	여신기간만료일 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			
여신실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 환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로부터 ()년 ()개월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는 여신개시일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는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이내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계 특 약	적립신탁대출에 대하여 관련 월적립금이 계속하여 4회이상 연체되는 경우 여신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적립식신탁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조(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1조에서 정한 한도액 및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대출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가.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한 경우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로 확인된 때

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

바.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 및 외화대출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7조(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8조(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9조(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

종 별	증서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 · · 까지 입 계 누 계 금 액	증 서 일 자	지 급 기 일
	계 좌 번 호					

제10조(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채비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 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지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 12조 (자금용도의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대출금(한도거래여신의 경우 인출금)의 용도의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1. 일반 여신 : 여신 취급일(한도거래여신의 경우 인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법인의 한도거래여신 : 인출금이 일상적인 상거래대금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은행이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③ 용도의 유용 최초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3년까지, 추가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0년까지 (신규 여신(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 포함) 취급이 제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용도의유용 적발정보가 제공되고, 타 금융기관의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자금용도의 유용 행위가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됩니다.

제13조(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	-----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